

한 국 보 험 계 리 사 회

서울시 종로구 새문안로 92 광화문오피시아빌딩 1507

☎ 782-7440 FAX 782-7441

한보계 제12 - 37호

2013. 2. 19

수 신 대표이사

참 조 선임계리사, CFP관련 상품.계리담당자

제 목 CFP특별위원회 질의사항알림 1차 공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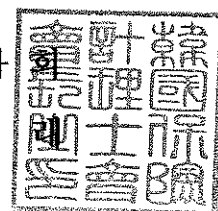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본 회 CFP특별위원회에서는 CFP시행에 따른 기초서류 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그에 따른 업계 질의사항을 취합하여 붙임과 같이 질의응답 자료를 알리는 바입니다.

3. 붙임관련 알림자료는 본회 홈페이지(www.actuary.or.kr) 공지사항에도 공지하는바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CFP관련 Q&A. 끝.

사단법인 한국보험계리사
회 장 박 상



<붙임>

CFP관련 Q&A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Q1. 갱신형 상품(보기 3년 이하)의 경우 현금흐름 산출방식에 의해 산출하지 않고, 3이원 방식으로 산출 후 자율상품으로 운영 가능한가요?

A. 갱신형 상품(보기 3년이하)의 경우는 보험업법 시행령 별표6(기초서류의 신고대상)에 따라 3이원 방식으로 산출 후 분석보고서 없이 자율상품으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Q2. 갱신형 상품(보기 3년 이하)을 현행 3이원방식으로 산출시 적용은 어떻게 하나요?

A. CFP적용 대상은 아니어서 현행 3이원 방식으로 산출 가능하나 감독규정 부칙 제3조(현금흐름방식 도입 등에 관한 특례)에 의해 2013.4월 CFP 특례조항이 폐지에 따라 해지환급금계산, 미경과보험료 적립금, 미지급시 부리이율 등 관련 모든 내용은 바뀐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단, 산출방법서 예정이율, 예정위험률, 예정사업비 등의 예정기초율 표현을 유지하되 수금비 표현은 변경합니다)

Q3. 2013.4월 이전 가입한 갱신계약의 갱신시 CFP적용 여부는?

A. 기존가입된 갱신평약의 경우 갱신시 적용은 현행과 동일하게 예정기초율만 변경하여 갱신 처리합니다.
미지급 부리이율 등 기존 가입시 설명 받은 내용과 다르게 적용될 경우 문제가 발생하므로 금차 변경되는 기준은 적용 받지 않습니다.

Q4. 최종보험료 결정을 위한 수익성 분석 결과 부합여부 판단시 실제 예상되는 모든 계약을 기준으로 이루어져야 하는지, 대표계약으로 가능한지요? 만약, 대표계약으로 가능하다면 선정 기준이 별도로 있는지요?

A. 실제 판매 예상되는 모든 계약 또는 대표계약으로도 분석 가능하며, 대표계약을 모델링하여 적용시에는 회사별 대표속성으로 반영이 가능합니다.

Q5. 책임준비금 계산에 관한 사항은 어떻게 되나요?

A. 감독규정 제6-12조(보험료적립금의 적용 이율 및 위험률 등)에
표준책임준비금 이상 적립하도록 되어 있으며
회사의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현행수준을 고려하여 적용합니다.
즉, 현행과 동일하게 $\text{Max}(V_{\text{적용}}, V_{\text{표준}})$ 으로 적립하여야 합니다.

구분	현행	변경
금리확정형	$\text{Max}(V_{\text{적용}}, V_{\text{표준}})$ - $V_{\text{적용}}$: 적용이율, 적용위험률 - $V_{\text{표준}}$: 표준이율, 표준위험률	좌동
금리연동형 (비산출형, 저축성)	$V_{\text{적립}}$ - $V_{\text{적립}}$ (과거법) 위험보험료: 적용이율, 적용위험률 / 신계약비 배분: 적용이율/ 적립금: 공시이율	
금리연동형 (산출형, 비UL상품)	$\text{Max}(V_{\text{적립}}, V_{\text{적용}}, V_{\text{표준}})$ - $V_{\text{적립}}$ (과거법) 위험보험료 : 적용이율, 적용위험률 / 순보험료 : 적용이율 / 적립금 : 공시이율 - $V_{\text{적용}}$: 적용이율, 적용위험률 - $V_{\text{표준}}$: 표준이율, 표준위험률	
금리연동형 (산출형, UL상품)	$\text{Max}(V_{\text{적립}}, V_{\text{적용}})$ - $V_{\text{적립}}$ (과거법) 위험보험료 : 적용이율, 적용위험률 / 신계약비 배분 : 적용이율/ 적립금 : 공시이율 - $V_{\text{적용}}$: 적용이율(보험료산출시 적용이율), 적용위험률	

Q6. 기존 사업비 용어는 산출방법서 sample에 표기된 용어로 통일된 것인가요?

A. 통일되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현행	변경
신계약비	계약체결비용
유지비	계약관리비용(유지관련비용)
수금비	계약관리비용(기타비용)

Q7. 산출방법서에 예정이율 용어가 쓰이지 않으나, 금리연동형 종신보험에 예정최저적립금에 사용하는 이율을 예정이율로 명시하고 약관에 적용해도 되나요?

A. 가능한 "예정"의 명칭을 사용하지 않고 준비금 적용시 사용되는 적용이율로 표현하여 사용하여야 합니다.

Q8. 해지환급금 계산에 관한 사항은 어떻게 되나요?

A. 감독규정 제7-66조(생명보험 해약환급금의 계산)에 표준해약환급금은 "해약V - 표준 α " 이상으로 적립하면 되나 최소 현행 해약환급금 이상을 지급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적용하기 바랍니다.

구분	현행	변경
금리 확정형	<p>V - Min(적용α, 표준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V 계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율 : Min(표준이율 125%, 예정이율) * 위험률 : 보험료산출시 적용위험률 - 표준α : 기준연납순P 계산은 적용이율, 적용위험률 	<p>Max[적용V-Min(적용α, 표준α), 해약V-표준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용V : 적용이율, 적용위험률 - 해약V : 표준이율125%와 표준위험률로 계산 - 표준α : 기준연납순P 계산은 표준이율, 표준위험률
금리 연동형 (비산출형, 저축성)	<p>V - Min(적용α, 표준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V 계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율 : 공시이율 * Pr : 적용위험률, 적용이율 * 사업비 : 적용사업비 * 신계약비 배분 : 적용이율 - 표준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준연납순P : 적용사업비 * 신계약비 배분 : 적용이율 	<p>V - Min(적용α, 표준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V 계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좌동(현행과 동일) - 표준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준연납순P : 적용사업비 * 신계약비 배분 : 표준이율
금리 연동형 (산출형, 보장성)	<p>상동(금리연동, 비산출형)</p> <p>단, 표준α : 기준연납순P 계산시 적용사업비, 적용위험률, 적용이율</p>	<p>상동(금리연동, 비산출형)</p> <p>단, 표준α : 기준연납순P 계산시 적용사업비, 표준위험률, 표준이율</p>

※ 금리연동형 pr계산시 적용위험률, 적용이율로 산출 (현행 금리연동형 과거법 V계산시와 동일)

※ 2011 적용 매뉴얼의 금리연동형(비산출형, 저축성)의 Pr, 신계약비 배분시 표준이율 적용은 표준이율 변경시 적립금 변동에 따른 상품개정이 자주 발생하고 금리연동형 보장성 과거법 상품과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적용이율로 변경

※ UL기능이 없는 경우는 금리연동형(산출형) V계산시는 max(V적립, V적용), 표준 α 는 표준기초율 기준으로 계산

Q9. 정기보험 산출방법서 sample의 경우 2011년도 제공된 매뉴얼과 해지환급금 계산식이 달라졌는데, 감독규정상 최저 해지환급금에 충실하기 위한 것인가요?

A. 기존 적용방법과 현행 감독규정 제7-66조(생명보험 해약환급금의 계산)의 최저 해지환급금을 비교하여 높은 금액을 지급하는 방법입니다.

2011년도 매뉴얼 Max(적용V, 해약V) - Min(적용 α , 표준 α)	변경 Max[적용V-Min(적용 α , 표준 α) , 해약V-표준 α]
--	--

Q10. 금리연동형 비산출형 상품에서 계약체결비용(알파1, 알파2)를 분할하는 계산에 적용하는 연금현가는 표준이율인가요?

A. 적립금 계산시의 신계약비 배분 현가시 이율은 적용이율(종전 보장계약 예정이율)이며, 표준해약환급금 계산시 적용되는 해약공제액에 쓰이는 할인율은 표준이율입니다.

(즉, 적립금 계산은 현행과 동일하나 알파1, 알파2 사업비 체크 및 표준해약환급금 계산시는 표준이율을 사용해야 합니다)

Q11. 미지급보험금, 분할사망보험금, 선납할인 등 약관에 쓰이는 이율은?

A. 표준약관을 준용하여 모두 표준이율로 적용합니다.

Q12. 보험금을 일시에 지급하지 않고 분할하여 지급하는 상품의 경우 보험료 산출을 위해 사망보험금을 할인시에 적용하는 이율은?

A. 표준약관상 분할보험금 일시지급시 또는 일시금을 분할지급시 표준이율로 통일하여 표현하고 산출방법서에 지급준비금도 표준이율로 적립해야 함 또한 현재 시산보험료 산출시 해당 분할보험금에 대한 현가 계산시에도 현행과 동일하게 적용이율을 사용합니다.

다만, 표준이율과 예정이율의 GAP 커 차이가 큰 경우에는 시산보험료 산출시 분할보험금 현가를 표준이율로 반영도 가능합니다.

Q13. 제도성특약의 경우 CFP방식 적용 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 A. 계약자의 선택 여부에 따른 옵션이므로 산출방법서가 포함된 경우 (ex. 연금전환특약, 건강체 할인특약 등) 라도 별도의 분석보고서를 작성하지 않으며, 신고대상에서도 제외합니다. 다만, 제도성 특약도 변경된 감독규정에 부합토록 CFP 기초서류에 맞추어 용어 등을 변경하여 적용합니다.

Q14. 거치형, 즉시형 일시납 저축, 연금보험의 표준해약공제액 산출시 연납순보험료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A. 연납순보험료는 신계약비(일시), 초년도유지비(단순합계), 수금비(일시)를 차감한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Q15. 만기환급형 상품(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만기에 돌려주는 상품)의 표준책임준비금 계산방법은?

- A. 기본적으로 표준책임준비금 계산시에는 표준이율 및 표준위험률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단, 기납입보험료 환급부분에 적용영업보험료 부분은 산출영업보험료를 사용합니다.

Q16. 만기환급형 상품(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만기에 돌려주는 상품)의 표준해약공제액 산출을 위한 기준연납순보험료 계산방법은?

- A. 산출식은 기존 3이원방식의 기준연납순보험료 산출방식을 적용하되, 이율 및 위험률만 표준이율 및 표준위험률 적용합니다. 즉, 기준연납순보험료의 만기환급부분에 사용되는 기준연납영업보험료는 표준이율 및 표준위험률을 적용하여 산출된 값으로 합니다.
(적용이율 및 적용위험률을 적용한 기준연납영업보험료를 미사용.
표준해약공제액 산출을 위한 기준연납순보험료는 항상 동일하게 산출)

[보험료분석보고서 관련]

Q1. 수익성 분석 결과로 음(-)의 수익성이 나올 경우 처리 방안은?

- A. 손익분석 결과가 음(-)의 값이 나오더라도, 특약포함 및 물량 반영한 실제 판매손익이 (+)이거나 상품판매의 타당한 근거를 분석보고서에 합리적으로 제시한 후 판매 가능합니다.

Q2. 최적위험률에 선택효과, 추세 등을 합리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지 여부?

- A. 최적위험률은 장래 현금흐름(보험금)이 실제 지급되는 금액에 최대한 근접하도록 추정된 기초율로 선택효과, 추세 등을 합리적으로 반영할 수 있으며, 책임준비금 적립을 위해 산출되는 적용위험률과 구별됩니다.
* 연령 및 경과기간에 따라 최적위험률이 적용위험률보다 큰 경우 발생 가능

Q3. 수익성분석 작성기준은 회사가 합리적으로 정할 수 있는지 여부?

- 수익성분석시 분석기간을 회사가 정할 수 있는지?
- 최적사업비율을 분석보고서 양식과 동일하게 산출/예시하여야 하는지?

- A. 보험료분석보고서(표준안)은 하나의 예시로 회사별 상황에 맞춰 수익성지표, 가정의 종류, 가정수준, 분석기간 등을 합리적으로 정하여 운영 가능합니다.

Q4. 수익성지표로 $PM(\%) = PV(\text{처분가능이익})/PV(\text{수입보험료})$ 만 가능한지요?

- A. PM을 수익성지표로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러나, PM에 대한 표준작성기준이 제정되기 이전에는 회사의 자율적인 판단하에 PM 이외의 다른 지표 사용도 가능합니다.

Q5. 지급여력비율 수준 및 지급여력증감 계산시 (해약식준비금 초과분 - 이연자산) 부분 적용 여부는?

- A. 지급여력비율 적용은 회사 판단하여 적용하되
최소 기준은 필요합니다. [감독상 권고수준 150% 이상]
- A. (해약식준비금 초과분 - 이연자산) 부분은 감독규정 제7-1조(지급여력금액)
을 따른 것으로 해당 부분의 영향도를 고려하여 반영 여부는 회사가
판단합니다.

**Q6. CFP가격산출매뉴얼(2011.11.11)에 의하면 최적해지출 경험통계 산출기간은
최근 3년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보험료분석보고서(표준안)에 제시된 경험
통계 산출기간이 5년으로 되어 있는데, 변경되는지?**

- A. 매뉴얼(2011.11.11)에 따라 최근 3년 이상으로 업무 처리합니다.
- * 매뉴얼은 최적기초율의 객관성, 합리성, 일관성, 최적의 추정 등을 위한
일반원칙을 제공하는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최적기초율별로 합리적인
사유가 있을 때 달리 사용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 보험료분석보고서(표준안)는 하나의 적용 예시입니다.

**Q7. 보험료분석보고서(표준안)에서 사용하는 최적위험률을 모두 나열하도록
하고 있는데, 대표 최적위험률만 나열해도 되는지?**

- A. 사전 매년 확정된 최적가정을 제출토록 할 계획이며
회사가 기초서류에 나열한 최적기초율 사용의 객관성, 합리성 및
일관성 등의 확인을 위해 사용하는 모든 최적기초율을 명시합니다.

**Q8. 계약이전용 세제적격연금상품을 CFP방식으로 산출시 판매속성 등의 예측의
어려움이 있는데?**

- A. 계약이전용 세제적격상품은 별도의 요율이 있는 주보험 상품으로
CFP방식으로 적용하여야 하며, 판매속성 등의 예측이 어려운 경우
회사가 예상한 속성을 기준으로 수익성보고서를 작성합니다.

Q9. 보험상품 신고서 양식 중 '적립순보험료 계산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게 되어 있는데 어떤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하는지?

A. 신고서 양식 '6. 가' 에 따르면 저축성보험 등 보험료 비산출형 상품은 적립순보험료 계산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으며, 기준은 보험료 및 준비금을 예시한 기준연령 기준으로 작성하면 됩니다.